

1. 개정 이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안 제6조)

- 1)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육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은 해당 아동의 적응상태 및 발달상황, 양육 현황,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함

나.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안 제7조)

- 1)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

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통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친생부모는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입양 절차의 진행 등에 대한 통지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서 및 통지서 서식을 정함

다. 입양의 의사표시(안 제8조)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함에 따라, 입양 동의·승낙서 및 철회서 서식을 정함

라.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안 제12조)

- 1) 법률에서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 없이야 함

마. 입양의 신청(안 제14조)

-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작성할 입양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하도록 함

바. 사후서비스 제공(안 제16조)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 상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과 지원,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가정 방문 또는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사. 입양정보 공개청구 관련 서식(안 제18조에서 제21조)

법률 개정으로 변경되는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서식을 정함

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입력·관리 방법(안 제22조)

법률 개정으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 보장원의 장, 시·도지사등, 위탁기관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정보의 범위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6조제4항제8호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의 교육 지원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입양아동의 장애 발생 시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3. 입양아동의 자신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제도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 입양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입양대상아동 결정의 확인) 법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아동 본인(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친생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가정법원 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등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대상아동결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

제6조(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정한 시·도지사등은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양육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상태 및 발달상황
2.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 현황
3.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제7조(친생부모의 통지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이하 “입양 절차의 진행 등”이라 한다.)에 대한 통지 신청을 하는 친생부모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기 전이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견인을 통해 아동의 입양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승낙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승낙서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양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제9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양동의·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제10조(양자가 될 아동과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상담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입양절차
2.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3.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4.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5.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

제11조(범죄경력 확인 요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항에서 같다)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제2항의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제12조제2항의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해당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②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정의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양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입양신청서 및 제11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등 서류 검토, 상담 등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환경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의 신청 및 그 조사에 따른 절차와 내용 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결연확인서 발급)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담과 지원,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부모나 양자가 그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2. 입양아동 및 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제17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신분증(주민등록

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으로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양육보조금을 지급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입양아동의 양육, 재학, 장애, 질병이나 진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육보조금 등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8조(입양정보 공개청구서)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4

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이 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양인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청구인은 의사의 소견서 등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20조(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제21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친생부모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하여야 한다.

제22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입력·관리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결연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18조의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9조의 입양의 신청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20조의 결연에 관한 정보
5. 법 제21조의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정보
6.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에 관한 정보
7. 법 제31조의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8. 법 제32조의 양육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9. 법 제33조의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정보

② 시·도지사등(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조치와 양육상황,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사항에 관한 정보
2.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 법 제17조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제공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입양당사자의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부 칙

③ 법 제13조제1항의 입양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의 필요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양부모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5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를 위해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입양절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모 []		
	주소	▶ 결연된 예비 양부모 []		
	연락처	▶ 후견인 []		
대상 아동	성명	보호개시일(입양대상아동 결정일)		
	주민등록번호	보호조치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신청인과 대상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아래 사항 중 후견인에 관한 사항이나 보호개시일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친생부 []		
	주소	▶ 친생모 []		
	연락처			
아동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지 회신방법	[] 우편(신청인의 위 주소)			
	[] 이메일(주소:)			
	[] 문자메시지(연락처:)			
	[] 전화(연락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의 입양절차 진행, 건강 및 복리상태에 관하여 통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과 자녀의 친생부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 아동과의 관계 ▶ 친생부 [] ▶ 친생모 []		
	주소			
아동 (자녀)	성명	보호개시일(입양대상아동 결정일)		
	주민등록번호	보호조치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소			
후견인	■ 후견인 유형: 시장·군수·구청장 [] 법원이 정한 후견인 [] 시설시설성년후견인 []			
위탁보호	■ 유형: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위탁가정 [] 기타 []			
통지 회신방법	[] 우편			
	[] 이메일(주소:)			
	[] 문자메시지(연락처:)			
회신 내용	[] 전화(연락처:)			
	아동의 입양절차 진행, 건강 및 복리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입양 동의·승낙서

입양 동의·승낙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함

양자가 될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후견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

동의(승낙)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

아동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부분은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친생부모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본 서식에 따라 입양 동의·승낙한 경우, 동법 제16조의 입양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별지 제5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같음)

- 법정대리인인 친생부모의 동의·승낙 거부나 불능 시 그 사유(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1.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5. 그 밖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사유를 기재:)

첨부서류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함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친생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친생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은 친생부모로서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부(父)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자 모(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동에 대해 입양의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 본 서식에 의한 친생부모 입양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 친생부모의 동의거부·불능 시 그 당사자 및 사유(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
- 친생부[]/친생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친생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친생부[]/친생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친생부[]/친생모[]가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첨부서류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아동 본인일 경우 본인 기재)

철회사유			
------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승낙)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승낙) 철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동의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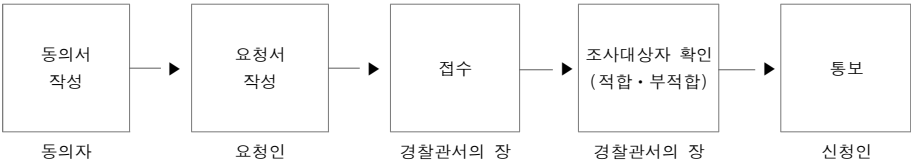
본인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조회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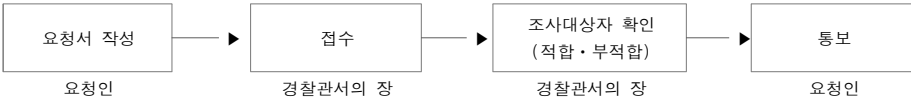
경찰서장 귀하

첨부 서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조회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요청인	성명		
	주소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외국인의 경우)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가정폭력 관련 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아동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관련 경력 [] 있음 [] 없음			
마약 관련 범죄 경력 [] 있음 [] 없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이
 고
 도

경찰서장

직인

유의 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조회 대상 범죄경력

1.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가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2.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범죄

3. 아동대상 성범죄

다음 각 목이 정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까지의 죄에 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를 위반한 죄

4. 성인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까지의 죄에 따른 성인 대상 성범죄 관련 범칙경력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 관련 범죄경력

[별지 제10호서식]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강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남[] 여[]		. . .
	주소		
연락처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간
	. . . 부터 ~ . . . 까지	
	교육명	

위 수강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아동권리보장원장

직인

유의 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증명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입양신청서

입양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	------	--

양 부 모 가	에비 양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될 사 람	에비 양모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등록기준지				
사 람	에비 양모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재산 (합산)	주택	종류([]자가 []전세 []월세), 대지			m², 건물	m²
	부동산	만원	동산	만원	부채	만원

가족관계	성명	관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 동거			
	성명	관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 동거			
가족관계	성명	관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 동거			
	성명	관계	생년월일	학력	직업
		[] 동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에비양부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에비양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수수료
	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없음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신청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결연확인서

결연확인서

양부모가 될 사람 (예비 양부모)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입양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결연 심의일	년 월 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의 입양대상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예비양부모)에 대한 결연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별지 제13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양육수당
[] 의료비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양부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양 아동	성명	생년월일	
	입양일	입양 당시 장애 유무(유[], 무[]) 질병 유무(유[], 무[])	
양육 수당	신청금액	원(월 원)	지급 신청기간 ~ (개월)
의료비	신청금액	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	
	진료기간		
	진료기관	진료내용	
	총진료비	보험급여: 원 비 급 여: 원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그 밖의 양육보조금	신청금액	원	신청내역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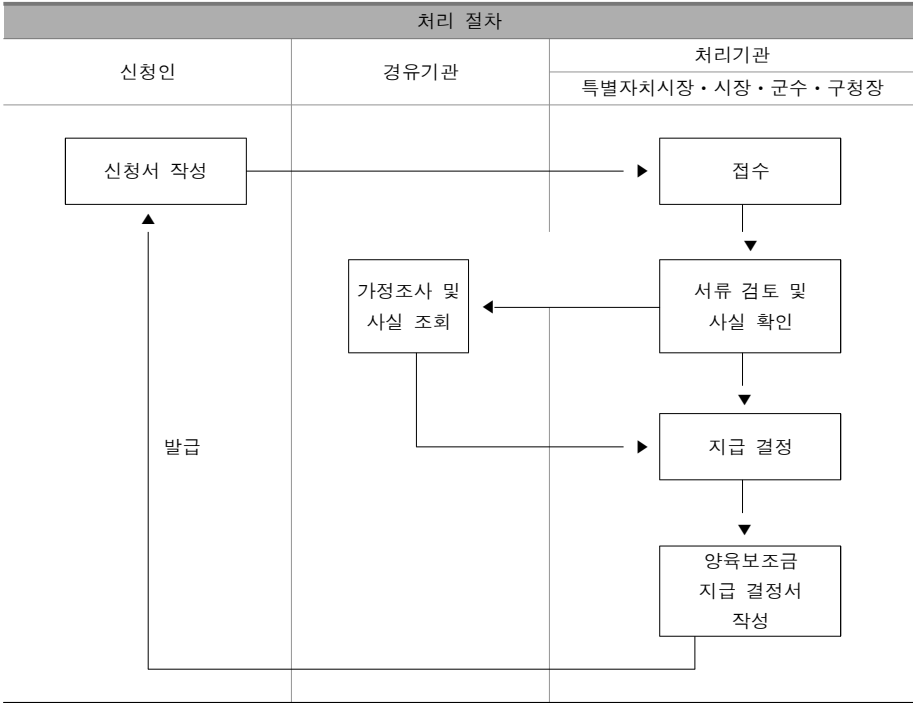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양육수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또는 구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비의 경우: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3. 그 밖의 양육보조금: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입양인)	성명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영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여권번호)						
	주소(거주지)						
청구 구분		[] 친생부모 인적사항 제외 공개		[] 친생부모 인적사항 포함 공개			
청구 내용	입양배경 정보	[] 입양 배경(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 사유,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시·군·구의 명칭)) [] 입양인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입양인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양시설 및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친생부모 인적사항 ※ 친생부모 인적사항 포함 공개를 선택한 경우만 표시	[] 친생모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친생부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친생부모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공개 방법	[] 열람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15

청구인(입양인)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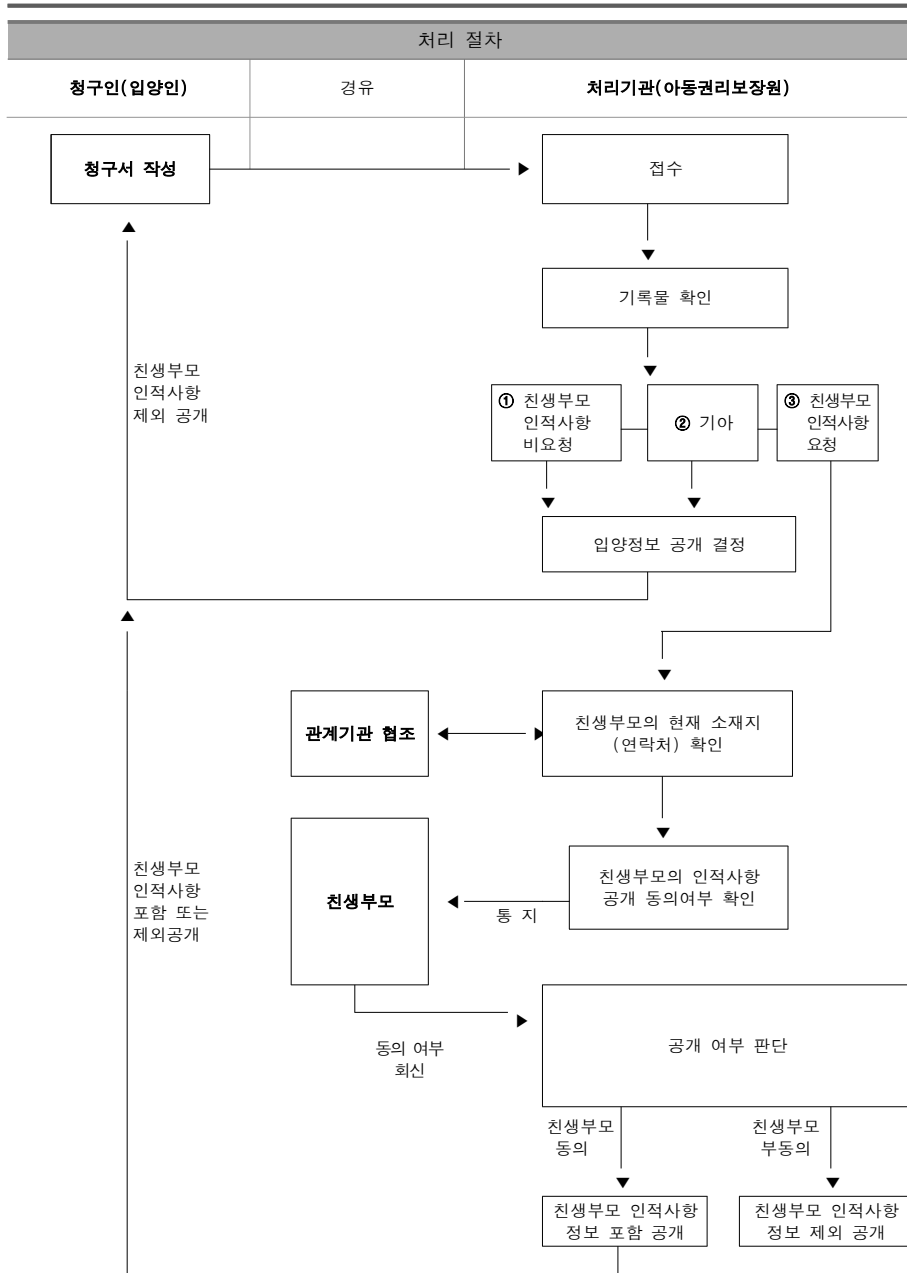
첨부 서류	1. 입양된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양인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없음

유의 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000 (주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공개 내용	[] 입양 배경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 사유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시·군·구의 명칭)			
	[] 입양인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입양인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의 입양인의 입양기록 열람 후 지정된 입양관련 정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당시)	[] 친생모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친생부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친생부모	① 소재 파악	[] 파악됨 [] 소재파악 불능 (사유:)	② 의사확인 [] 확인됨 [] 확인안됨 (사유:)	③ 정보공개 동의여부	
				[] 모두 동의함 [] 일부 동의함 (동의사항:) [] 모두 부동의함	
	친생부	[] 파악됨 [] 소재파악 불능 (사유:)	[] 확인됨 [] 확인안됨 (사유:)	[] 모두 동의함 [] 일부 동의함 (동의사항:) [] 모두 부동의함	
				[] 모두 동의함 [] 일부 동의함 (동의사항:) [] 모두 부동의함	
결정 일자	년 월 일	공개내용	별지와 같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비공개 내용 비공개 사유				

귀하의 입양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장

직인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별지: 청구인(입양인)의 입양정보 관련 내용

공 개 내 용	[] 입양 배경(입양당시)	▶ 친생부 나이 ()세		▶ 부존재 []
		▶ 친생모 나이 ()세		▶ 부존재 []
		▶ 입양일자 ()년 ()월 ()일		▶ 부존재 []
		▶ 입양 사유:		▶ 부존재 []
		▶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시/군/구 명)		
		친생부()		▶ 부존재 []
	친생모()		▶ 부존재 []	
	[] 입양인의 인적사항	▶ 입양 전 이름:		▶ 부존재 []
		▶ 출생일시:		▶ 부존재 []
		▶ 주민등록번호:		▶ 부존재 []
		▶ 주소:		▶ 부존재 []
	[] 보호기관	▶ 출생장소:		▶ 부존재 []
		○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 부존재 []
		▶ 명칭:		
	▶ 주소:		▶ 부존재 []	
▶ 연락처:		▶ 부존재 []		
(두 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하여 기재)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당시)	* 아래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			
	친생부	▶ 이름:		▶ 부존재 []
		▶ 생년월일:		▶ 부존재 []
		▶ 주소:		▶ 부존재 []
		▶ 연락처:		▶ 부존재 []
	친생모	▶ 이름:		▶ 부존재 []
		▶ 생년월일:		▶ 부존재 []
		▶ 주소:		▶ 부존재 []
		▶ 연락처:		▶ 부존재 []

유의 사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6호서식]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입양인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일			
	성명			
	주소			
공 개 내 용	[] 입양 배경(입양당시)	▶ 친생부 나이 ()세		▶ 부존재 []
		▶ 친생모 나이 ()세		▶ 부존재 []
		▶ 입양일자 ()년 ()월 ()일		▶ 부존재 []
		▶ 입양 사유:		▶ 부존재 []
		▶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시/군/구 명)		
		친생부()		▶ 부존재 []
	친생모()		▶ 부존재 []	
	[] 입양인의 인적사항	▶ 입양 전 이름:		▶ 부존재 []
		▶ 출생일시:		▶ 부존재 []
		▶ 주민등록번호:		▶ 부존재 []
		▶ 주소:		▶ 부존재 []
	[] 보호기관	▶ 출생장소:		▶ 부존재 []
		○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 명칭:		▶ 부존재 []
	▶ 주소:		▶ 부존재 []	
▶ 연락처:		▶ 부존재 []		
(두 군데 이상인 경우 추가하여 기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인이 요청한 입양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바, 동의 여부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아동권리보장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입양정보공개 동의서

입양정보공개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동의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양아동과의 관계 친생부 [] 친생모 [] 기타[]

입양아동 (입양인) * 알지 못하는 경우 미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아래 동의란에 하나라도 동의하면 동의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하고, 모두 부동의하는 경우에만 부동의란의 [] 부분에 √ 표를 합니다.

동의	친생부모인 동의권자의 입양 당시의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에 대해 입양인(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동의	[] 친생부모인 동의권자의 입양 당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모두 입양인인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의권자인 본인은 위의 각 사항을 입양인인 청구인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위와 같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의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